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5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2
※ 참고자료	11
1. 2024년 해수욕장 지정 예정 현황	11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4)	12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6555호)

가.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4.

다. 회 부 일 : 2026. 2.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⑦ ~ ⑨ (생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2. 검토 사항

□ 금연구역의 지정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흡연자의 흡연 감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나¹⁾ 2011년 6월, 국회·정부 등의 청사, 학교, 의료기관, 대형건물 등 26종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²⁾.

○ 한편, 법령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³⁾, 2017년 12월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1)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 6. 7. 일부개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26. (생략)

3)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327호, 2010. 5. 27. 일부개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이 추가되었고, 2023년 8월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음.

< 금연구역 지정제도 연혁 >

연 도	내 용
1995년	· 대상 시설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대상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의료기관, 학원,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등 10종의 공중이용시설
1999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변경·확대 - 혼인예식장 삭제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사(校舍), 목욕장 추가
2002년	· 대상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전체 금연구역 지정 대상: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육시설
2003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확대 - 게임·PC방, 만화방, 일정면적 이상 음식점, 보육시설, 정부청사 등
2006년	· 금연구역 지정 대상 공중이용시설 확대 -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 등
2010년	· 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권 신설
2011년	·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PC방 6개월 유예기간, 음식점은 면적에 따라 3년간 단계적 시행
2016년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지정 근거 신설
2016년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추가
2017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추가
2023년	·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추가

<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 관련 규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6의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법 제9조제5항)과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법 제9조제6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을 해수욕장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은 「해수욕장법」 제6조에 따른 지정 해수욕장⁴⁾과 비

지정 해수욕장으로 구분됨. 지정 해수욕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백사장의 토양과 수역의 수질 등 시설 및 환경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임.

-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정 해수욕장은 강원도 95개 소, 전라남도 66개 소 등 총 286개 소가 관리·운영되고 있으며(【참고1】 2024년 해수욕장 지정 예정 현황), 개장 기간 이용객은 2024년 4,0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남.

<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용객 현황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객(명)	27,202,032	22,730,294	39,836,187	37,973,431	41,143,488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data/15105950/fileData.do>, 최종검색일: 2026. 2. 23.)

- 개정안에 따라 해수욕장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수욕장의 기본 및 기능시설(백사장, 산책로, 탈의시설, 안전시설 등), 지원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 판매·대여시설 등) 등⁵⁾에서 흡연이 금지되

4) 「해수욕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이하 생략)

5) 「해수욕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제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 2) 산책로

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간접흡연에 의해 흡입된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비소, 벤젠, 크롬, 부타디엔 등 수많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이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비흡연자도 폐암, 후두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 이외에도 어린이들은 천식이 악화되거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성인들은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금연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이에 근거하여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및 이용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객 수 등을 고려하여 조례⁶⁾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시도 별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5년) >

시도	지정 개소수	근거법령
전국	125	「국민건강증진법」
서울	-	-
부산	7	제9조제7항
대구	-	-
인천	11	제9조제7항
광주	-	-
대전	-	-
울산	1	제9조제7항
세종	-	-
경기	-	-
강원	76	제9조제7항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1	제9조제7항
경북	-	-
경남	17	제9조제7항
제주	12	제9조제7항

※ (출처) 2025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2025.12.31. 기준)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실외 금연구역(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광장 등) 설정은 해당 구역에 대한 지자체별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자체별 조례를

6) 「강원특별자치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가. 백사장

나. 광안리해변테마거리(광안하수펌프장부터 민락펌프장까지)

통해 지정·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시설 30m 이내 구역)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예방 및 건강 보호 목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한국담배협회는 실외 금연구역 지정은 그 실효성, 관리 가능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조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광범위한 개방 공간 전체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현장 집행의 실효성 저하 및 단속 과정에서의 행정 갈등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2024년 해수욕장 지정 예정 현황(잠정)
--------------	--------------------------------

시도	해수욕장 지정 현황(예정) - 286개소
부산광역시(7)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해운대
인천광역시(11)	떼뽀루, 을왕리, 서포리, 수기, 십리포, 응암, 이일레, 장경리, 장골, 왕산, 하나개
울산광역시(2)	일산, 진하
강원도(95)	(강릉) 사천진, 정동진, 안인, 등명, 주문진, 도직, 영진, 하평, 사근진, 송정, 경포, 순긋, 안목, 사천, 강문, 남항진, 옥계, 연곡, 금진 (동해) 노봉, 대진, 망상리조트, 망상, 어달, 추암 (속초) 외옹치, 속초, 등대 (삼척) 궁촌, 덕산, 맹방, 문암, 부남, 삼척, 상맹방, 오분, 용화, 원평, 임원, 작은후진, 장호, 증산, 하맹방, 한재밀 (고성) 가진, 거진1리, 거진11리, 공현진1리, 공현진2리, 교암, 대진1리, 대진5리, 마차진, 명파, 문암2리, 문암캠핑장, 반암, 백도, 봉포, 봉수대, 삼포, 삼포2리, 송지호, 송지호오토캠핑장, 아야진, 자작도, 천진, 청간, 초도, 켄싱턴리조트, 화진포(현내), 화진포(거진), 화진포콘도, 반비치 (양양) 갯마을, 광진, 38(기사문), 낙산, 남애1, 남애3, 동산, 동산포, 동호, 물치, 북분리, 설악, 송정, 원포, 인구, 잔교, 정암, 죽도, 중광정, 지경, 하조대
충청남도(32)	(보령) 대천, 무창포 (당진) 난지섬, 왜목마을 (서천) 춘장대 (태안) 갈음이, 구례포, 구름포, 기지포, 꾸지나무굴, 꽃지, 달산포, 마검포, 만리포, 몽산포, 바람아래, 밧개, 방주굴, 방포, 백사장, 삼봉, 샛별, 신두리, 안면, 어은돌, 연포, 의항, 장삼포, 천리포, 청포대, 파도리, 학암포
전라북도(8)	(군산) 선유도 (고창) 구시포, 동호 (부안) 격포, 고사포, 모항, 변산, 위도
전라남도(66)	(목포) 외달도 (여수) 거문도, 만성리, 모사금, 무슬목, 방죽포, 안도, 웅천, 장등, 낭도, 대풍, 사도, 서도, 손죽, 신덕, 정강 (무안) 톱머리, 홀통, 낙지공원(신규지정) (영광) 가마미, 송이도 (함평) 돌머리 (진도) 가게, 관매도, 금갑, 신전 (해남) 사구미, 송호 (보성) 울포솔밭 (장흥) 수문 (완도) 금일명사십리, 보길예송, 보길중리, 보길통리, 생일금곡, 신지동고, 신지명사십리, 약산가사, 청산신흥, 청산지리 (신안) 대광, 돈목, 배낭기미, 백길, 분계, 설레미, 시목, 신도, 우전, 원평, 짱뚱어, 추포, 하트, 홍도, 황성금리 (고흥) 금장, 나로우주, 남열해돋이, 대전, 덕흥, 발포, 연소, 염포, 용동, 익금, 풍류
경상북도(26)	(포항) 구룡포, 도구, 영일대, 월포, 칠포, 화진, 신창 (경주) 나정고운모래, 봉길대왕암, 오류고아라, 전촌솔밭, 관성솔밭 (영덕) 경정, 고래불, 남호, 대진, 오보, 장사, 하저 (울진) 구산, 기성망양, 나곡, 망양정, 봉평, 후정, 후포
경상남도(27)	(거제) 구영, 구조라, 농소, 덕원, 덕포, 망치, 명사, 물안, 사곡, 여차, 옥계, 와현모래숲, 죽림, 학동흑진주몽돌, 함목, 황포, 흥남 (창원) 광암 (통영) 비진도, 사랑 대항, 수륙 (사천) 남일대 (남해) 두곡월포, 사촌, 상주은모래비치, 설리, 송정솔바람
제주도(12)	곽지, 금능, 김녕, 삼양, 이호테우, 함덕, 협재, 신양, 중문색달, 표선, 화순, 월정

자료 : 해양수산부

【참고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4)
-------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현황(2024) >

총 계	청사 (제1~5호)	유치원 · 초·중·고 (제6호)	대 학교 (제7호)	의료기관 · 보건소 등 (제8호)	어린이집 (제9호)	청소년 활동시설 (제10호)	도서관 (제11호)	어린이 놀이시설 (제12호)
	17,048	20,097	565	76,120	28,813	1,244	5,768	65,018
1,674,871	학원 (제13호)	교통 관련 시설 (제14호)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제15호)	복합용도 건축물 등 (제16호)	공연장 (제17호)	대규모점포 · 지하상점가 (제18호)	관광 숙박업소 (제19호)	체육시설 (제20호)
	88,629	10,769	42,429	191,932	582	1,672	3,191	65,155
	사회복지시 설 (제21호)	목욕장 (제22호)	게임제공업 소 (제23호)	음식점·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제24호)	만화대여업 소 (제25호)	고속국도 휴게시설 · 부속시설 (제26호)	공동주택 (제 5항)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경계 30m (제 6항)
	58,034	5,918	24,255	917,394	756	336	3,423	45,723

※ (출처)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추출(2024.12.31. 기준)